

2026년 7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2026.08.06

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법령명/공포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7.1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 등 명확화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규정 - 제품 겉면,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 범위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2026.7.7	-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	-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 근거 신설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7.7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6.7.7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	- 한국환경공단 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역할 규정(포장기준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및 자료수집,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 실태조사 등)

	마련	포장기준 위반 확인 시 포장재질방법 검사 명령 절차 마련
폐기물관리법 2026.7.7	-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 범위 확대 - 폐기물 처리정보 관리 실효성 강화	- 인체유래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미입력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6.7.7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 시, 심각한 경영위기 등 별도의 사유 없더라도 분할 납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7.15	- 사업자의 기록보존 부담 완화 - 대기오염 관리기준 합리화 - 비산먼지 관리체계 정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 시,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 보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조정(0.12ppm → 0.10ppm)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및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정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7.28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청 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계획서 등 첨부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검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7.30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왕겨 등 보조원료를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혼합 -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투입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 완화(3,000kcal/kg 이상 → 2,000kcal/kg 이상)

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2026.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마련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 신청 절차 및 기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2026.7.14	상위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과징금, 입증자료 관련 인용 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 고시에 환경성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관한 장 신설 - 실증자료의 요청·제출 절차, 제출기간 및 작성기준 구체적 규

	반영 • 환경성 표시광고의 실증자료 제출 기준절차 명확화로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정 •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학술문헌 등 실증방법별 세부 기준 마련 • 실증자료 요청서 서식 정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기준 일부개정 2026.7.20	•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	•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2026.7.23		• 재난, 국제분쟁 등으로 제품·포장재의 수급 또는 제조·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부 제품·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할 수 있도록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2026.7.24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 절차와 희석처리 시 준수사항 규정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보고, 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승인,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 마련 • 대체복토재의 종류 및 복토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존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본 고시로 통합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6.7.27	• 기존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 •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 1330) 추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026.7.2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8.7)으로 확대된 정보 공개 대상 및 범위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방법과 보호자료 관리방법 정비	• 법령 개정으로 정보공개 대상범위가 확대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추가 요청수리 절차 신설 및 공개 유예 근거 마련 • 자료보호 기산일을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화 • 자료보호 요청 시 제출자료 및 사유 등 영업비밀 판단자료 작성방법 명시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추가 개발

2026.7.8 ~ 7.29	다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의한 감측 활동을 추가로 인정	※ (현행) 연료전환방법론 → (개정) 노후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3 ~ 8.2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확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 기준 명확화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 및 적용기준 구체화 -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사전협의의무 신설 - 주민지원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 (현행)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내 → (개정)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20% 이내 -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 :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절차 생략 가능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8.24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기준 구체화 -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명확화로 사업장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은 해당 표시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같음 - 수급인 및 단기근로자 취급담당자의 법령 안전교육 시간 단축 ((현행) 16시간 → (개정) 8시간) 및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사항 명시 등 서식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9.14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 추가	-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 포함, 기존 자율 준수에서 의무 준수 체계로 전환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의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15 ~ 9.14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적용할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구체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15 ~ 9.14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	2027~2030년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 - 소규모제작자 기준이 되는 판매량 기준연도 현행화, 연간 국내 판매량 5만 대 이하 제작자를 중규모 제작자로 분류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실적 산정기준 조정,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감측 실적 및 간접 배출 저감기술을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027~2030년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규정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15 ~ 9.14	자발적 감축기간 종료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온실가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 -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실적에 대한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16 ~ 8.5	- 고철비철금속을 이용한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의 불법수출 방지 - 순환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합리적 개선	-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16 ~ 8.5	- 국내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 지원 - 재생 폴리에스테르(PE) 원료 확보와 페타이어 연구 활용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개선	- 수입금지 품목 ‘폐섬유’중 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제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 받은 시험·연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 수입 제한 제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7.23 ~ 8.11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의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계량값 예외전송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조치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포함 - 보세구역에서 폐기되는 물품에 대한 위치정보 전송 예외 인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장이 영상정보 전송장치(CCTV) 설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입로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를 전송 예외로 인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6.7.23 ~ 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 -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 제공	-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해당 유형에 승인유예기간 부여 - 국내 사용 및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완료 및 이행종인 II그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 -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은 사후 관리를 위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로 현황 정보 표시, 승인신고 현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

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7.27 ~ 8.18	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 (제 2026-77호) 2026.7.29 ~ 8.19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른 이행대상 구분 명확화	• (신규물질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 신설 • (저확산 물질)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 • (기존물질) 인체 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오기 정정 및 유해성분류 추가(5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29 ~ 9.8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29 ~ 9.8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6.6.9. 공포)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확용측매) 구체화 •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3년→1년 6개월2년)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에 맞추어 자구 정비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2026.7.30 ~ 8.20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개선	•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 변경(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추가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차액반환 규정 추가 •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내용 추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31 ~ 9.12	•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추가 •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7.31 ~ 9.1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 마련 및 미비점 보완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 규제 대응 전략, 인허가 및 분쟁 대응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이용우

대표변호사

02-316-4007

ywlee@shinkim.com

이병화

고문

02-316-7290

bhwlee@shinkim.com

박건우

변호사

02-316-1787

gwpark@shinkim.com

백규석

고문

02-316-4207

gsbaek@shinkim.com

김민관

변호사

02-316-1735

mkwkim@shinkim.com

김기용

수석전문위원

02-316-4496

gykim@shinkim.com

